

한국사회운동에서 교사운동의 의미와 역할 변화

전교조의 결성, 변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사회운동에서 교사운동의 의미와 역할, 변화 양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구조적 맥락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전교조의 구조적 변화를 한국사회운동의 발전과정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교사운동의 과정에서 핵심주체들이 겪게 되는 피해의 양상과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 양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1970년대~1980년대 말 전교조 결성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교단에 진출한 젊은 교사그룹의 정치사회적 경험과 지향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구조적 맥락을 바탕으로, 특히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문제를 중심으로 전교조의 내부적 갈등, 운동방향 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 주요어: 사회운동, 전교협, 전교조, 민주화, 해직교사

1. 시작하며

한국 현대사는 식민, 해방, 전쟁, 분단, 반공, 독재의 유산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 모순적 유산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를 관통해 왔고,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헌법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해 놓은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른 강요가 이어졌다. 이러한 시기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친일 지주가 반공투사가 되고, 친일파와 반공투사가 사회 엘리트로 귀결되는 모순적 질서 속에서 반공주의적 교육관에 비판적 시선을 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 교사직의 소명을 내건 반정부 투쟁을 의미하였다. 교육자적 양심조차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던 시대에도 교사들의 민주화 의지는 이어졌고, 1980년대를 관통하며 한국 사회운동과 궤를 같이 하던 교사운동¹⁾은 급기야 1989년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운동에서 교사운동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했음에도 운동사적 맥락의 정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사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사적 평가와 정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운동의 사업장별, 국면별 운동사 정리, 전노협과 같은 중앙조직 차원의 운동사 정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의외로 교육민주화운동사 연구는 많지 않다.²⁾ 대부분 공개투쟁 중심의 사건 나열 위주이지 전교조

1) 교육민주화운동 진영에서 1987년 말 ‘교사운동’과 ‘교육운동’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1989년 전교조 결성시점까지 교원노조건설론과 자주적교원단체 건설론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전교조 2011, 219-225). 이 글에서는 이 논쟁의 내용과 달리 운동의 내용적 측면을 지칭할 때는 교육민주화운동, 주체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교사운동으로 사용한다.

2) 주목할만한 교육민주화운동사적 성과로는 전교조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엮은 전교조, 『한국교육운동백서(1978-1990)』(풀빛, 1990)가 대표적이다. 이 책은 ‘성명서’, ‘선언문’ 등 교육민주화 관련 원자료를 충실히 복원하였다. 그 후 약 20여 년 만에 전교조가 펴낸 『참교육한길로1(법외노조편)』(참교육, 2011)은 전교조 결성을 둘러싼 다양한 내부 논의를 상당 부분

결성까지의 주요한 흐름, 내부의 견해차이, 전교조 결성 과정의 갈등, 결성 후, 합법화 후의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드물게 확인되는 전교조에 대한 학술적 평가는 주로 전교조 합법화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정파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남궁운(2007)은 교육 정책에 대한 전교조의 정파 간 의견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금자(2006)는 정파 간 대립으로 전교조 내부 공론장의 소통이 원활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평가를 이렇듯 내부 견해차이의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피상적 접근에 머물고 만다.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이행의 격변기에 새롭게 영입되는 교사들의 정치사회적 인식과 학생운동의 경험, 중요한 국면 전환의 시기 필연적인 탄압을 동반했던 해직자 문제, 당면한 과제를 위한 전망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파적 대립만을 부각시킬 경우, 내부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게 된 이유, 조직의 구조적 한계가 대두된 배경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교육민주화운동의 전개와 변화 양상을 구조적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크게 세 가지 맥락을 전제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민주화 이행의 측면과 전교조의 구조적 역할 변화의 문제이다. 과거 교육민주화운동이 규범적 당위의 대변이었다면, 민주화 이행의 과정을 겪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문운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현재의 전교조 활동은 ‘다양한’ 가치들의 각축 속에 들어와 있다는 점

복원하고 있다. 또 주요 사건별 참여교사들을 소상히 밝혀 놓았다. 전교조가 엮은 두 권의 운동사 외에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해직교사들의 교육민주화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엮은 이영재, 『자유·희망·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동연, 2011)가 있다. 이 책은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한 명예회복의 쟁점, 과거청산적 관점에서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 교사들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1989년 당시 현장의 주요 활동가가 저술한 정기평, 『19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형성사, 1989)는 전교조 결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쟁을 현장감 있게 풀어내고 있으며, 주요 국면별 평가를 담고 있다. 개인의 교육민주화 경험을 중심으로 엮은 이상호, 『거기 너 있었는가』(열린 숲, 2008)는 5·18에 참여한 교사들의 투쟁과 전교조 관련 투쟁의 경험이다. 교육민주화에 오래 헌신했던 필자의 경험을 엮은 이영희, 『아이들이 희망이다』(대구교육연구소, 1998)는 에세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시기 민주화투쟁이 시대적 요청이었고 그 전선 속에서 교사운동이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면, 민주화 이후 전교조는 구조적으로 교육분야의 이해와 요구 조정, 대안제시를 통한 국민적 설득 작업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교사운동의 과정에서 핵심주체들이 겪게 되는 피해의 양상과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 양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행 국면에서 수반되는 전교조의 역할 변화가 외적 변수라면, 조직내적으로 해직교사 문제는 때로는 정국의 돌파를 위한 방파제로서, 때로는 조합의 대중적 확대나 단체교섭의 딜레마이기도 했다.

셋째, 1970년대~1980년대 말 전교조 결성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교단에 진출하는 젊은 교사그룹의 정치사회적 경험과 지향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반독재 투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교단 진출이 갖는 의미는 정부도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로 컸다. 정부는 1987년부터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의 신규교사 임용 시 보안지침을 강화하여 아예 원천적으로 교단진출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반면,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새로 교단에 진출한 교사들은 이러한 경험을 전혀 공유하지 못했고, 임용고시 세대들이어서 이들의 교사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배 그룹들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구조적 맥락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적 흐름에서 교사운동의 전개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교사운동의 내부적 쟁점과 현재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내부적 쟁점 및 현재적 과제와 관련하여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문제를 중심으로 전교조의 내부적 갈등, 운동방향 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동안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에서 해직교사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공개된 자료의 부족과 시국사건, 사립학교 재단 정상화, 평교협 활동, 전교조 결성, 교원임용제외 등 해직의 유형이 복잡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해직의 범위는 다소

포괄적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는데, 국공립 외에 사립학교 교사들의 재단정상화 투쟁과 국립사범대학 우선임용조항이 유지될 당시 시국사건을 이유로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던 ‘교원임용 제외’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문제를 중심으로 볼 경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정치적 암흑기’에 전개된 교육민주화운동의 양상, 1980년대 초반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진행된 공개투쟁과 비공개소모임의 조직적 확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투쟁과 각급 사립학교의 재단정상화 투쟁,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안당국의 폭압적 탄압, 1999년까지의 법외 노조기 전교조의 내부적 고민과 갈등,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시기까지 교육민주화운동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즉, ‘시기상조론’, ‘전교조 사수론’, ‘정파간 대립’ 등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교사운동

1) ‘겨울공화국’의 반독재 투쟁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 이후 침체되었던 학생운동이 1971년 3월 ‘교련철폐 투쟁’과 4월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의 결성 등 반독재투쟁 움직임을 가시화하자 박정희 정권은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고 서울 시내 7개 대학에 위수군을 진주시키고, 8개 대학에 휴학령을 내리며 강력한 탄압을 전개한다(KNCC 인권위원회 1987, 274-293). 교사운동도 교원노조가 5·16 군사쿠데타로 해체³⁾된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말 그대로 암흑의 시기를 겪었다. 유신시대 폭압적 탄압기, 학생운동조차 쉽

사리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민주화 요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시기 교사운동은 비공개 소모임 형태로 잠복해 있었다. 일부에서는 반공교육, 식민지 노예교육이 판을 치던 학교현장에서 반독재투쟁의 필요성을 자각한 교사들과 교원노조의 주요 인사들이 비공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기도 했다.⁴⁾ 이러한 모임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4·19 교원노조의 문제의식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970년대 중반까지 고립·분산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교사들의 비공개 소모임에서는 주로 김지하 시인의 〈오적〉이나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 양성우 시인의 〈겨울 공화국〉 등을 토론하고 암울한 정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조차도 공안당국에 발각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70년대 중반은 ‘민청학련’ 사건 등 유신반대 투쟁이 보다 확대되고, 노동현장에서도 민주노조 결성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1970년대 초반 반독재투쟁 및 유신반대 투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교단에 들어오면서 학교 현장에서 자생적인 비공개 소모임 활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하 소모임 운동을 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는데, 극단 〈상황〉이나 홍사단의 〈교육실천연구회〉 활동 등이 공개활동을 하던 대표적 소모임이다. 특히 〈상황〉에 참여하던 교사들

3) 제헌헌법 이래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이전까지는 헌법상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4·19 이후 한국교원노조는 합법적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부는 1962년 개헌과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말았다(김현준 1998a, 62).

4) 일례로 ‘4·19 교원노조’ 창립교원들인 강기철(4·19 교원노조대표), 박웅철(4·19 교원노조 초등위원장), 김문심(4·19 교원노조 경북연합위원장), 김남식(함석헌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계훈제(재야 운동가) 등이 소위 ‘웅암동’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1981-1984년 교단 경험을 토대로 〈어린 종달새의 죽음〉을 일간지에 기고해 수상했던 이치석 교사도 이 모임에 결합했던 교사였다(이영재 2011, 67).

은 기존의 잠행적, 파상적 흐름과 달리 ‘민주구국교원연맹(민교련)’⁵⁾과 같은 조직적 반유신 투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소위 ‘남민전’ 산하의 ‘민투’, ‘민교련’에 교사들의 참여가 이어졌고 1979년 11명의 교사들이 구속되었다.⁶⁾

민주구국교원연맹이 내걸었던 지향점은 당시 반독재민주화를 염원 하던 교사운동의 인식적 단면을 보여준다. 첫째,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 교육 철폐, 민족주체성 회복과 민중적 교육 실시, 둘째, 관료적인 주입식 교육방식 철폐, 민주적·자율적 교육 풍토 조성, 이론과 실천의 통일적 교육 실시, 셋째, 지배층 중심 교육제도 개혁하여 민중 교육기회 확대, 넷째, 일체의 식민지 문화 타파, 민족주체적, 민중적 민주문화를 건설하여 (중략)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다섯째, 식민지적·부르주아적·봉건적 관념 타파로 진정한 민주의식 고무, 지방색과 남녀차별을 폐기하여 민족적 동질성 확보, 인간평등성을 기한다(전교조 1990, 19).

10·26 사태로 유신체제가 무너지자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들이 복학했다. 국립사대 복학생들은 ‘민청학련’, ‘오돌돌 사건’, ‘전국대 학생연합’ 사건 및 기독교 청년과 각종 학내 시위 관련자들이었다. 1981년을 전후로 학업을 마치고 교직에 진출한 이 세대들은 제적기간과 복학 이후 야학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재야 민주화운동과 연계를 맺었던 그룹으로 1980년대 초반 교사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예비하는 세대들이었다(전교조 2011, 81).

5) 민주구국교원연맹은 1976년 2월 결성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일명 남민전) 산하의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일명, 민투 1977년 1월 5일 결성)’ 소속으로 만들어졌다.

6) 남민전, 민투, 민교련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교사들은 김명(광성고), 김정자(서울사대부중), 박광숙(명성여중), 신우영(우신중), 이계천(남강고), 이수일(정신여중), 이은숙(일신여상), 이재오(대성고), 임규영(경북사대), 임기묵(명성여고), 장미경(행당여중) 등 11명이다.

2) 1980년대 초반 교사운동의 조직적 양상 변화

한국사회운동에서 1980년 광주민주항쟁은 20세기 후반 한국사회의 모습을 규정한 결정인자, 즉 역사의 진행과정을 좌우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자 요소이다(정대화 2007; 조희연 2007). 사회운동의 조직운동적 관점에서도 광주민주항쟁은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다(강형민 1990, 142쪽 이하). 광주민주항쟁은 교사운동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교사운동의 조직적 성장과 대중적 투쟁이 고양된다. 일부 교사들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이후 교사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⁷⁾

‘광주의 세레’를 받은 젊은 교사그룹이 1980년대 초반 대거 교단에 진출하였고, 이 세대의 결합이 1980년대 중반 교사운동의 조직적, 대중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반면, 1980년대 초반 반유신 투쟁을 경험한 젊은 교사들의 결합으로 비공개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교사소모임 또는 여타 사회운동조직과의 관련으로 신군부의 탄압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아람회’ 사건(1981년 8월), ‘부림’ 사건(1981년 9월), ‘오송회’ 사건(1982년 9월) 등으로 많은 교사들이 불법연행되고 구속, 파면되었다. 또한 ‘교과서 분석’ 사건(1983년 11월)으로 많은 교사들이 연행되었다(전교조, 민교협, 강사협 공편 1989, 463).

1980년대 초반 교사운동은 조직적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온다. 교사운동은 1970년대와 달리 공개적 대중투쟁과 비공개적 소모임 확대를 통한 학교현장의 조직화라는 두 갈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사운동의 전개 양상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진행된 ‘전민노련’과

7) 광주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교사들은 다음과 같다. 윤영규(광주여상)는 시민주수위원회의에 가담하였고, 정해직(전남 보성 노동국)은 항쟁지도부 민원실장을 맡았으며, 박석무, 윤관장, 박행삼(이상 광주 대동고), 김준태(전남고), 이상호(전북 완산여상), 문봉길(전북 신흥고), 신종권(부산 영남상고), 김홍수(충남 홍성 광천여중) 등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구속, 해직되었다(전교조 2011, 83).

‘현장 소그룹’의 논쟁, 학생운동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한 ‘선도적 투쟁론(학림)’과 ‘준비론(무림)’의 흐름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교사운동의 본격적인 공개적 대중투쟁의 출발은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의 결성이다. 1981년 2월 열린 YMCA 연맹 주관 ‘청소년사업정책협의회’에서 학교교육과 청소년 대책을 협의하는 교사 모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이 움직임이 1982년 1월 다락원에서 결성된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로 이어졌다. 1983년 ‘YMCA 사우회’, ‘한국글쓰기 연구회’, 1984년 ‘홍사단 교육문화연구회’, ‘민요연구회’ 등이 연이어 결성되고 공개적 대중투쟁이 활성화된다.⁸⁾

이러한 공개적 실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과 나란히 파상적으로 유지되던 비공개 소모임들이 지역별 모임 등을 통해 체계적인 결속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주로 서울지역의 남부지역교사모임, 중서부, 동부, 북부 지역 등으로 확산되었다(이금자 2006, 82). 비공개 소모임의 확대 배경 또한 군부독재와 저항을 경험한 새로운 신규 교사들의 자세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⁹⁾ 학생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젊은 교사들은 대학 선배 관계 등을 통하여 학습모임을 만들어 나갔으며, 주된 관심은 학교나 교육문제보다는 야학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닿아 있었다(전교조 2011, 92).

공개적 실천활동의 모색과 학교현장의 비공개 소모임 확장이라는 두 가지 흐름은 활동내용과 실천방향에서 각기 다른 성과로 귀결되었다. 공개적 모임은 합법적 공간과 안정적인 조직체계하에서 성과들을 축적하면

8) 공개교사모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하여 ‘Y교협’의 전국적 확산과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의 팔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전교조 2011, 99-102) 참조.

9) 이 신규교사 그룹은 시교위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을 정도의 실천력을 체화하고 있었다. 일례로 1981년 서울시교위 소속으로 유신체제 반대투쟁과 서울의 봄을 겪은 국립사대 출신 교사 600여 명이 신규배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 교위는 신규배정 교사들의 발령을 고의로 지체시키는 관행이 있었다. 여기에 150여 명이 연서명 청원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시발령 투쟁을 전개하여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승리를 하였다. 이것이 1980년대 최초의 교사집단행동이었다(전교조 2011, 91).

서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졌고, 공개활동의 폭을 넓혀 교육민주화의 저변을 확대해 갔다. 반면, 비공개 모임은 비공개 조직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결합한 젊은 교사그룹에 힘입어 학교 현장의 문제들에 밀착하여 교육문제를 학습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1980년대 초반부터 전국교사협의회 창립까지 학교현장의 조직적 토대가 되었다.

3) 1980년대 중반~1987년 6월 항쟁까지 교사운동의 흐름

1980년대 중반 사회운동의 제반 흐름은 공개적, 대중적 투쟁 양상으로 전환된다. 노동운동 진영은 1985년 ‘구로연대파업’을 전개하고 ‘서노련’, ‘인노련’ 등을 결성한다. 학생운동 진영도 기존 ‘소그룹’ 또는 ‘패밀리’ 운동에서 ‘민민투’, ‘자민투’의 결성과 활동 등 공개적 투쟁체 활동이 주목받았다. 교사운동의 경우도 이러한 사회운동의 흐름과 유사한 변화를 가져온다.

교사운동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강력한 공개 실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교사운동의 대표적 공개조직이었던 ‘Y교협’은 1982년 시작하여 1986년 7월까지 21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Y교협의 회보 「민주교육」이나 「상록」은 교사운동의 조직사업과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1985년에는 교육이념과 교육제도를 문제 삼은 『민중교육』과 교사들의 교육실천과 교육사를 중심으로 다룬 『교육현장』이라는 무크지가 약 2년여 동안 출간되며 교사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전교조 2011, 104 이하).

교사들의 민주화 요구가 학교현장에서 조직적으로 확장되고, 대외적 실천활동이 주목받게 되면서 점차 전두환 정권의 탄압도 강력해졌다. 5공화국은 1985년 7월 23일~8월 3일, KBS, MBC 등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민중교육』이 용공계급투쟁적 시각으로 교육을 분석하고 있으며, ‘88올림픽 개최 및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

였다. 이 시기 정부는 「학원안정법안」을 마련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등 학생운동 및 교육운동을 포함한 제반 민주화 요구에 대해 강력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이영재 2011, 78).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 달리 교사운동 내적으로 이러한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사들의 민주화 요구는 공개적·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1986년 5월 10일 서울, 광주, 춘천, 부산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이 단행되었다. 이 선언은 교사운동이 갖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는 민주화의 열기는 역사의 필연이며 각 부문의 민주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교육부문의 민주화는 사회전체의 민주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교육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의 토대이며 완성이기 때문이다(전교조 1990, 51).”

이 선언 직후 정부는 대대적 탄압을 예고했으나, 교사들의 조직적 저항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지지 표명에 밀려 징계가 악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교사운동의 조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교육민주화선언’은 여름방학을 통해 전국 각지로 이어지고 교사운동의 공개적 투쟁과 조직력 확대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처럼 교사운동이 보다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현장 비공개 소모임의 조직력 확대와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젊은 교사들의 결합, 지속적인 공개투쟁의 확대 등에 힘입은 것이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 시기와 달리 해직교사들이 다시 교사운동의 외곽조직을 결성하며 교육민주화운동으로 결집하여 활발한 실천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민중교육』과 관련하여 15명의 교사가 ‘파면’되고 같은 해 8월 17일 현직 교사 2명과 실천문화사 주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1986년 9월에는 1985년부터 교사들의 시위 및 모임 등에서 유인물을 배

포하는 등의 활동으로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권 차원의 탄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해직 교사들은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재차 교사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조직적 시도를 전개하게 된다. 또한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하여 서명했던 교사 361명은 전교조 결성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흐름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전국 각지 교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게 된다.

3.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1) 교사운동의 조직적 성장

다른 부문운동과 마찬가지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교사운동은 비약적 성장을 한다. 사회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교사운동이 성장한 사실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실로 확인된다. 당시 교사운동은 해직교사들을 중심으로 55명의 교육계 인사를 국본에 참여시킨다. 또한 6월 초 전주 Y교사 16명의 ‘민족민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이 발표되고, 서울 Y중등교사회도 105명의 교사가 ‘정치민주화 없이 교육민주화 없다’는 선언을 한다. 전국적으로 183명의 교사들이 정치적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 많은 교사들이 6월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였다(전교조 2011, 182-183).

6·29 선언 이후 이어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시점에 광주·전남과 서울의 Y교협과 민교협, 지역소모임 활동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민주화,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진행하였

다. 이 대토론회에서 교사운동의 조직적 전망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교사대토론회 결과 ‘자주적 교사(원)단체(이하 자교단)’¹⁰⁾ 결성이 결의되었고, Y교협은 7월 27일 모임에서 ‘자교단을 장기적 전망으로 하는 한시적 매개단체’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이 흐름은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1987년 8월 22일 ‘전국초등민주교육협의회’를 시작으로 9월 5일 전남, 19일 강원, 20일 충남, 22일 서울, 25일 인천, 26일 부산, 광주, 전북 교협까지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9월 27일 전교협이 결성된다. 또한 11월에 충북과 제주교협이 창립되면서 시·도교협의 창립이 완결되기에 이른다(전교조 2011, 190-197).

1988년까지 전국적으로 121개 시·군·구에 ‘교사협의회’가 결성된다. 이 시기 동안 사립학교에서는 정부와 재단에 휘둘렸던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불붙듯 일어났고, 750여 개 학교에서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를 결성한다. 평교협은 지역교협의 활동가가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거나, 독서회나 친목회가 전환한 경우, 교련 탈퇴나 사학민주화 투쟁과정을 통해 결성된 경우, 일상적인 학교문제를 논의하던 교사모임이 평교협으로 전환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 현장에 결성된 자발적 조직이다. 평교협은 전교협의 전국적 조직 확대와 더불어 전교조 결성까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활동했다. 특히, 평교협은 사립학교 정상화투쟁과 대한교련 탈퇴 운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¹⁾

10) 당시 ‘자교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세관의 차이에 따라 ‘교원노조건설’, ‘민주교육쟁취 투쟁위원회 건설’, ‘교육법 개정과 현장 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중조직 건설’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원노조’와 ‘자교단’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전교조 결성 시점까지 이어진다. 1988년 7월 25일부터 진행된 전교협 제2차 임원연수회에서도 자교단 건설에 관한 제안이 제출되었다.

11) 당시 일선 학교 현장의 평교협 발기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리는 창의력 없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서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무사안일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해 왔고, 비인간적인 상대적 경쟁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게 되었으며, 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자적 양심은 더욱 위축되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 오늘 우리의 선언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슬기롭게 생각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는 양심

이러한 조직적 성장은 1988년 11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교육법 개정’과 ‘교사의 노동3권 쟁취’를 기치로 대중투쟁을 본격화하는 힘으로 연결된다. 1988년 말 순조롭게 진행되던 ‘교육법 개정안’이 야 3당의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유보되자, 전교협은 1988년 12월 ‘민주교육법 쟁취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단식투쟁, 지구당사 점거 농성 등을 전개하며 교육악법 개폐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중적 교육법 개정투쟁의 열기는 1989년 교원노조 건설의 동력으로 이어졌다(이영재 2011, 88-89).

2) 자교단-교원노조 논쟁

대중적으로 교육법 개정투쟁을 추동할 정도로 성장한 교사운동은 ‘교원노조’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교사운동 진영 내에서는 교원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주체역량과 정세인식 등의 차이로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1989년 2월 17일 서울교협 대의원회의는 ‘교원노조’안을 채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달리 ‘자교단’ 건설을 촉구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심각한 격론을 거쳐, 결국 표결 끝에 1표 차이로 ‘교원노조’안이 채택되었다. 교사운동의 전망 즉, 자교단과 교원노조를 둘러싼 논쟁은 1988년 7월 전교협 제2차 임원연수에서 본격화된다.

당시 전교협 집행부는 전교협 1년 활동의 성과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었고, 언론, 병원, 사무금융, 전문기술직 등 다양한 업종의 노동조합

적인 교사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는 “거듭 태어남”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덕원공업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어떠한 이유로서도 교사의 자율성과 제반 민주적 권리가 제약되어서는 안 되고 교사의 진정한 의사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불신과 오만으로 가득찬 교무실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육주체인 교사는 소외된 채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학교행정을 척결하여 밝고 명랑하게 서로 협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중략)(1988. 10.15. 「부산덕원공고 평교협 발기 취지문」 중).

건설과 투쟁이 전개되는 하반기에 교원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상당한 운동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1988년 하반기 교원노조 건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현장 대중역량에 기반을 둔 자교단 건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전국적으로 시·군·구교협의 대중역량을 결성·개편하여 이 힘을 바탕으로 시·도교협을 개편한 후 전교협을 완성된 교사대중조직으로 개편해야 하고, 이 조직과정의 매개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법개정투쟁을 배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先) 자교단 건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노조만 결성되면 대중조직의 내용이 채워진다는 것은 조직형식주의요, 성급한 노조주의라는 입장이었다. 현행법상 불법인 교원노조 건설은 교사 대중의 정서와 사회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모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교단의 완성체로 전교협과 같은 협의체를 넘어서는 ‘전국교육자협회’ 또는 ‘전국교육자회’를 제시했다(전교조 2011, 298; 정기평 1989, 75).

그러나 이 논쟁은 당시 학교현장까지 그 핵심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일선 교사들은 단순히 조직형태의 선택문제로 이해하였고, 향후 “노조를 선택할 것인가, 특별법인으로서 협회를 택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이 국면에 대해 정기평은 “대중운동으로서 교사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당면한 교육법개정투쟁을 대중투쟁으로 수행하며 대중조직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이 공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정기평 1989, 77)” 그렇지 못했다고 평한다.

이 논쟁은 다시 ‘전교협의 합법화’ 논쟁으로 이어진다. 전교협의 합법화 주장 역시 일선 활동가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로 나아가는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비쳐졌고(정기평 1989, 77)”, 1988년 12월 열린 전교협 제3차 임원수련회에서 노조건설로 그 방향이 급선회한다. 이 수련회에서 ‘법제화 후 노조건설’ 노선이 폐기되고, 법개정에 상관하지 않고 ‘선 노조건설 후 합법화 쟁취’를 결의하며 선 교원노조 건설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전교조 2011, 305-317).

교원노조건설에 대한 정권의 극심한 탄압은 교원노조를 주장하거나 자교단을 주장하는 두 진영이 공히 예상하는 바였다. 또한 이 두 주장의 궁극적 결론은 교원노조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지만, 그 방식과 시기, 정세관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전국차원의 강력한 대중투쟁, 즉 당시로서는 교육법개정투쟁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원노조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드높아지는 가운데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교협 합법화’ 주장의 골자였다. 이를 대중투쟁 즉, ‘매개투쟁’을 통한 교원노조건설안 이라고 한다면, 선 ‘교원노조’ 건설 주장은 이미 교사들의 대중적 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홍보교육이 행해 진다면 교원노조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주장의 핵심 전제조건, 즉 방식과 시기, 정세관의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충분한 합의의 토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분출하는 교육민주화의 요구들을 담아내는 보다 강력한 조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구체적 조직전망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 운동가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제기된 전망이 ‘교원노조’ 건설론이었다. 결국 이 흐름은 1989년 2월 25일 결성한 전교협의 ‘교(직)원노조 건설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지고, 1989년 5월 14일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발기인대회로,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진다.

3) 폭압적 탄압과 정면돌파의 갈림길

과정상의 논란을 차치하고 보면, “전교조 결성은 우리 사회의 참담한 교육현실을 전 국민 앞에 폭로시키면서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고 이제 새로운 교육, 참교육의 시대가 열렸음을 역사와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한 일대 사건(정기평 1989, 259)”이었음에 틀림없다. 조직적 전망을 두고

차이를 보였던 각각의 입장들은 전교조에 대한 엄혹한 공안탄압 국면에서 전교조 사수를 위한 절박성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1989년 봄 임수경, 문익환, 서경원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정색된 공안정국의 탄압 강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총체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1988년 4·26총선 이후 구성된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하고, 청문회가 도입되어 5공 청산작업이 진행되며 수세에 몰렸던 노태우 정권은 12월 28일 「대국민 민생치안 특별지시」를 통해 각종 불법시위·노동쟁의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방침을 밝혔다(한겨레신문 1988/12/29). 노태우 정권은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민주화운동 진영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자행한다. 1989년 3월 22일 ‘공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대응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노동자 파업현장, 농민시위, 학생시위 등이 공권력에 의해 강경진압되었다. 1989년 4월 12일 부산교대생 이경현이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또한 1989년 4월 30일 노동절 기념행사가 사전불허되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이러한 공안탄압의 절정기에 전교조는 심각한 피해에 직면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전교조 관련 단체행동을 교사들의 권리 문제가 아닌 안보적인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전교조 조직 와해에 초점을 맞추었다(국정원과거사위원회 2007, 366). 안기부가 직접 개입하여 전교조 와해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안기부는 공안차원에서 교직원노조를 내사하고 전교조 결성을 주도한 핵심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하고, ‘반사회’까지 동원하여 대국민 홍보심리전¹²⁾을 병행하였다. 1989년 정기국

12) 공안기관의 대국민 홍보는 색깔론과 성직자적 교사관을 바탕으로 하였다. 당시 노동자로서의 교사상을 정립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담론도 다수 제출되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전선: 전교조 탄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신인령(1990); 강경선(1990); 이원희(1989) 참조.

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안기부, 감사원, 총무처, 경제기획원, 내무부, 치안본부, 법무부, 문공부, 전국 시·도를 망라하는 전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국정원 2007; 이영재 2011, 124-125). 청와대는 안기부와 검찰을 포함한 차관급 실무자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당정회의를 통해 민정당의 전 조직을 동원하는 탈퇴공작도 직접적으로 벌였다(전교조신문 1989/10/11).

1989년 2월 노 대통령이 지방순시에서 <고교생 의식화교육 예방지도>¹³⁾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이래 5월 1일 문교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급 학교에 ‘노동조합결성예방지도’를 지시¹⁴⁾하고, 5월 16일 교직원관계대책회의를 통해 노조결성 주동자 100여 명에 대한 형사처벌 및 파면·해임을 결정하였다. 6월 30일 전교조 탈퇴시 처벌을 완화해준다고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1일을 기해 조합원 전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발표가 있었다. 문교부는 7월 17일 중징계대상 4,900명(공립 1,500명, 사립 3,400명)을 발표하였고, 전교조 탈퇴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였다. <표 1>과 같이 약 1,500여 명의 교사가 7월 26일부터 전교조 결성과 조합 탈퇴 거부를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되었다.

정부의 총체적 탄압국면에서 전교조 결성 당시 12,610명에 달했던 전교조 가입 교사 중 11,145명(88.4%)이 탈퇴각서를 제출하였고, 탈퇴각

13) 「고교생 의식화교육 예방지도 철저」(89.2.10-3.18): 요즘 고등학교에까지 좌경 의식화활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되는 바임. 교육위원회와 관계 기관(주관: 문교부, 관련: 안기부, 국토통일원, 내무부)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의식화 기도를 강력히 저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대통령 지방순시 중 지시사항」: 12-07-49).

14) “... 의식화 사례를 정확히 조사, 언론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학부모가 연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 대응토록 하되, 우선 학부모가 단결하여 문제교사들의 의식화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연속되는 경우 교단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학부모회 활성화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특히 이들 문제교사들의 의식화활동을 방임하는 교장 등 감독자들도 엄중히 문책할 것(「문교부 업무보고시 대통령지시사항」 1989.4.25).”

〈표 1〉 전교조 결성 관련 피해 현황

계	해직형태			학교형태	
	파면	해임	직권면직	공립	사립
1,465 (11.6%)	116	970	379	816	649

※ 해직자 중 65명은 소청과정 또는 직면면직 후 탈퇴하여 복직되었다(자료: 문교부, 「교원 노조관련자료집」, 1990.12.765)

서를 제출하지 않은 1,465명(11.6%)의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 무렵 전교조 지도부의 방침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상처 입은 채라도 조직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극적 차원에서 피해를 감내하기엔 해직의 피해가 워낙 컸다. 학교 현장에서는 조직이 거의 초토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당시 전교조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조합방어 방침과 달리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당시 적극적 대응방침을 주장했던 한 교사운동 활동가는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 내용은 1,500명 교사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힘 있게 합법성 쟁취 싸움을 벌이지는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해직교사들의 강도 높은 단결투쟁은 물론, 현장 교사들의 전교조 건제사실을 알리는 ‘분회공개투쟁’ 전술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의 본부 지도부 주류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노조건설은 성공적이다, 이를 지켜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현장 교사들의 요구와 거리가 먼(?) 합법성 쟁취투쟁 보다는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요구를 담은 활동을 펼치는 것을 우선이라고 대꾸했다. 그럴 것이었다면, 더구나 노조 건설은 ‘시기상조’ 아니었는가?(이을재 2002, 131-132)

당초 논란과 같이 전교협의 대중적 토대를 다지는 ‘매개투쟁’ 과정이었다면 피해의 규모가 훨씬 적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왕 전교조가 결성되었고, 완전히 조직이 와해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해직되지 않은 1만여 명의 교사를 주축으로 전교조를 사수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던 당시 시도부의 판단이 오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에 와서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조합의 결성 이후 새롭게 제기된 조직내적인 여건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당위적인 민주화 투쟁 시기와 달리 조합 결성 이후 전교조는 한층 더 조합원들의 이해·요구에 민감해졌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 조합의 안착을 위한 필수적 요청이기도 하였다. 조합원의 대량 해직사태에 직면한 전교조는 학교현장의 조합원들과 밀착하는 과제 외에 다수 해직 조합원의 복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했다.

이 문제는 당장 전교조 결성 1년 후인 1990년부터 표면화된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1990년 전교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원상회복 및 합법성 쟁취투쟁’의 강화를 투쟁방향으로 제출한 서울지부의 안이 부결된 것이다. 그러자 서울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 결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전교조 합법성 쟁취와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하였다.¹⁵⁾ 서울지부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개 지회별로 ‘합법성 쟁취 전진대회’를 조직하고 5월 4일 ‘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를 현장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조합원 수보다 3배나 많은 8,146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한겨레 신문광고 투쟁에는 전국 280여 학교 교사들이 참여했다(전교조 2011, 657-658).

그러나, 8월 19일 전교조 제5차 대의원대회에서 이 서울지부의 투쟁

15) 대의원대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및 합법성 쟁취투쟁’을 중심으로 하자는 주장은 4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시 제기되어 격론 끝에 당시 기획국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전교조 2011, 657).

은 현직교사들의 힘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서 이들을 권력의 탄압 앞에 무방비로 내세워 결과적으로는 전교조와 현직교사의 사이가 유리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전교조 2011, 659). 전교협의 합법화를 통한 매개투쟁 주장으로부터 이어져 온 논의의 흐름과 대량 해직교사의 발생, 조합의 결성과 사수라는 요청 속에서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내부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문제는 점차 조합 내적 딜레마로 자리잡는데,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재단정상화 관련 해직교사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시차를 두고 전교조 결성에 동참했던 국립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4. 대량 해직과 복직투쟁, 노동조합의 딜레마

1) 사립학교 교육민주화투쟁과 해직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 학사운영 등에 대한 항의가 1980년대 중반부터 터져나왔다. 각 사립학교에서는 1987년 9월 전교협 결성 전후로 ‘평교협’을 결성하여 조직적·집단적으로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사립학교 ‘평교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단비리척결’ 운동을 중심에 두고, ‘학생자치활동 보장’, ‘보충, 자율학습의 폐지’ 등을 쟁점화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있어 왔던 불법적 채용기부금 반환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1988년 2월까지 서울 명신고, 정화여상, 유성전공, 전남 나주 세지중, 충남 공주 신평중·중고, 경기 파주여중고 등을 중심으로 사학정상화투쟁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30여 명의 교사가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터 해임되었다. 전교협은 꿈을대로 꿈은 사학재단 비리투쟁이 점차 고양되자 1988년 3월 26일 전교협 산하에 ‘사학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학민주화투쟁을 지원하였다. 1988년 8월 광주 진흥중 채용기부금 반환투쟁 이후 다시 불붙기 시작한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1989년 전교조 결성 시점에 즈음하여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 평교협을 결성하고, 대거 전교조 조합원으로 합류하였다.

1989년 7월부터 전교조 탈퇴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대량 해직되고, 전교조 탄압의 칼날이 1990년 초 사립학교의 재단정상화 투쟁으로 옮겨갔다. 전교조 결성 등 교육민주화 열기에 밀려 주춤하던 사학재단들이 정부차원의 대규모 해임 조치에 편승하여 전교조 지지 교사, 사학민주화 투쟁에 참여한 교사, 평교협 교사 등을 파면처리한 것이다. 그 여파로 1989년 1~2월 두 달 동안 경남 진해여상, 인천 명신여고, 부산 덕원공고, 부산 경희여상, 서울 정화여상, 정의여상, 대원학원, 경남 창신고 등에서 93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그 이후에도 해직교사 복직서명에 참여하거나 전교조 활동 등을 이유로 경남 통영종고, 양산중, 진량고, 의정부영석고, 서울여상 등에서 징계가 이어졌다. 서울 경기여상, 금성초고, 영등포여상, 영신여실고, 청구상고, 목포 신명여상, 목포 예술고 등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운동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되었다(전교조 2011, 911-922; 이영재 2011, 219-314).

사학민주화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의 활동을 유형화 하면, ①재단의 재정비리, 교권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맞서 개별 또는 집단적 행동을 한 경우, ②감사결과, 언론 보도, 기타 자료를 통하여 재단의 비리를 시정하거나 교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재단의 권력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행동(집단행동 포함)이 징계사유가 되고, 별도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 ④기타 사학민주화와 관련하여 해직된 교원 등이다.¹⁶⁾

사립학교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교조 결성 당시 대부분 조합원

으로 가입하였으나 1989년 7월 이후 상당수가 전교조를 탈퇴한다. 사학 정상화 투쟁이 계속되는 학교가 다수였고, 새롭게 투쟁이 시작되는 학교의 경우 조합원 탈퇴 후 학교현장에서 투쟁을 지속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의 경우가 아니면, 학교별로 해직 시점의 편차가 크고, 전교조가 대대적 탄압에 직면하여 속수무책으로 대량해직의 피해를 입고 수세국면에 몰리자 이에 편승한 재단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2) 국립사대 예비 교사들의 원천 해직과 임용투쟁

교육민주화의 대중적 열기가 확산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안당국의 대책은 전교조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가입교사에 대한 탈퇴공작·참여교사 징계뿐만 아니라 복직교사나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보안심사를 통해 교원선발과정에서 단순시위 경력자들조차 원천적으로 임용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교육민주화투쟁에 동참하게 될 신규교사들의 교원임용을 사전에 봉쇄한 것이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교원임용제외자’란 국립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을 졸업한 자로서 교사임용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이거나 졸업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예비교사를 말한다. 전교조 결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거나,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참여한 경우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임용제외교사들을 1999년과 2001년에 걸쳐 특별채용하면서 ‘시국사

16) 이 유형 구분은 교육부가 사립학교 재단정상화 투쟁 과정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을 특별채용할 때 활용한 유형구분이다(교육부, 「해직교사특별채용추진계획」 2000.1.28).

건'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시국사건이란, ①반정부 집회 및 시위, 유인물 배포, 단체결성 및 가입, ②노동운동관련 사건(위장취업, 노학연대투쟁, 인천지역노동자회, 노동현장파업, 전교조 활동 등), ③학원 민주화운동 관련 집회 및 시위(학원안정법반대, 졸업정원제 반대, 학내민주화운동)를 말한다.¹⁷⁾

문교부 명의의 「신규 교원임용에 대한 문교부 지침」(1987.1.16)의 골자는 “신규 교사임용절차 강화 및 현직 교원의 복무 감독 철저”였다.¹⁸⁾ 각 요구사항은 교육법 제7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행불량의 범위에 불법학원 소요자, 불순단체 가담자, 불법시위 가담자 등을 적시하고 결격자가 교사로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신규임용후보자 교직 적격성 여부 심의 시 성행이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자가 교사로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교직부적격 여부의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동규칙 제7조 제5호)를 마련하였으니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려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또한 중등교원임용에 따른 신원특이사항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자가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교조 결성이 추진된 1989년 무렵에는 이전 보다 강화된 형태로 시행되었다.¹⁹⁾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립사범대학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성향을 중심으로 임용제외 여부를

17)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항.

18) 주요 내용은 “교사를 신규로 임용할 때는 성행이 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선별하여 임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법 제77조 제3호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들 규정을 적절히 운용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자가 임용되어 물의를 야기하고 전 교원의 지위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교육적 활동이 학생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관계법령 적용을 소홀히 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다.

19) 전교조 결성을 기점으로 문교부는 1989년 7월 25일 교육부 장관의 ‘교원임용 예정자에 대한 보안 심사 강화 지시’를 하고 학생운동 경력 예비교사들에 대한 보안심사 및 성행불량자 조항 등의 임용통제장치를 강화하였다.

판단하였다.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부결’ 결정을 할 경우 해당자는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안심사는 당시 경찰청 등의 내사 기록을 토대로 ‘신원특이사항’²⁰⁾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은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면접에서 전교조 지지의사를 피력하면 임용에서 제외하였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기에도 정권반대투쟁 등과 관련한 교원임용제외 사례가 있었으나 이 시기 임용제외의 성격은 유죄판결, 퇴학, 제명 등의 조치에 따른 학생자격 박탈로 학적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였다면,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서는 졸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수한 경우에도 학생운동에 참여하거나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경우 교원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에 이른다(이영재 2011, 318). 특히 전교조 문제가 불거진 노태우 정권에서는 보안심사를 한층 더 강화(전교조 1989)하여 교원임용제외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3)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문제점

1990년 상반기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된 이래 원상회복 투쟁은 1991년까지 전교조의 중심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피해당사자들인 해직교사들이 1992년 전면에 나서 복직투쟁을 이슈화한다. 해직교사들은 1992년 3월 1일 경희대에서 ‘전교조 합법성 쟁취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 해직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직교사원상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월 2일에는 민자당 앞 농성투쟁에 5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1992년 10월 11일 건국대에서 ‘전교조 합법성 쟁취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20) 신원특이사항의 주된 내용은 학내 집회 및 시위 주도자, 학생회 간부, 전교조 간사 활동 등 제반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들이다.

위한 전국 해직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400여 명이 다음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등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이슈화하였다.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공약화했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자, 1993년 1월부터 다시 해직교사들의 복직투쟁이 시작되었다. 1월 31일 동국대에서 1천여 명의 해직교사들이 모여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해직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2월 1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 후 위원장, 지부장들의 단식농성이 2월 13일까지 계속되었고, 각계의 지지가 잇따랐다.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김영삼 정부는 1993년 해직교사 복직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른다(전교조 2011, 660-662).

그러나,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웅당 해직교사의 복직조치는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사과하고 교단복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교단복귀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교단복귀의 전제로 전교조 탈퇴각서를 요구하였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1993년 9월 16일 길옥화 교사가 투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당시 해직교사들의 교단복귀를 허용한 정부의 입장은 그 방식과 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첫째, 전교조 지도부와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나온 해직교사들의 교단복귀 결론은 ‘특별채용’이었다. 교육부에 의한 ‘특별채용’은 해직무효확인소송의 무효확인 결정의 효력과 같이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과 호봉, 급여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져 해직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해직기간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신규임용’ 형식이다. 이는 형식상 교단복귀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복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부당한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전제로 교단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가 마치 시혜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이 특별채

용을 행함으로써 해직교사들에게 자칫 투항을 강권하는 격이었다. 실제 1994년 특별채용시 1,421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자 94명, 사회민주화 관련자 22명, 비전교조 관련자 26명 및 전·현직 핵심 활동가 다수는 정부의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전교조 2011, 671). 결국 제외된 해직교사 중 일부는 4년이나 지난 1998년 두 번째 특별채용 조치에 의해서 교단에 복귀해야 했으며,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진 1999년과 2000년, 2001년에 걸쳐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고 참여와 협조를 통한 새학교 문화창조 기반 조성”의 목적하에 전교조 해직자, 시국사건 관련자, 사학민주화 관련자, 국립사대 임용제외자 등이 특별채용되었다. 그것도 국립사범대학 교원임용제외자는 국회가 별도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야 1999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특별채용될 수 있었다.

5.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 4월 혁명 이후 교원노조 건설부터 이어져 온 교사운동의 흐름은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70년대의 정치적 암흑기에도 교사운동은 자생적 소모임의 흐름으로 유지되었고, 1980년 광주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은 신규교사들의 교단 진출과 더불어 사회운동의 확대 과정에서 교사운동도 조직적·내용적 측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각 사회운동 영역이 전국적 단위의 조직을 결성하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교사운동도 1987년 전교협의 건설로부터 1989년 전교조의 결성을 이루어낸다. 다소

특이한 점은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우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조직적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교사운동은 전교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교조는 공안탄압의 정국에서 단일 조직으로서 가장 심각한 조직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교사운동의 내부적 쟁점과 현재적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989년 전교조 결성 후 꼭 10년 만인 1999년 전교조는 합법화를 이루었다. 전교조 합법화가 임박한 1998년 당시 전교조 연대사업위원장은 “합법노조로서 활동 경험이 없는 전교조로서는 노동조합의 일반적 활동에 대한 교육은 물론 교원노조로서 수행해야 할 광범위한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김현준 1998b, 9)”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합법화를 맞는 전교조의 과제로 ①교육정책 대안 제시, ②조합원 교육의 체계적 실시, ③조직체계의 정비, ④조직확대를 제시했다(김현준 1998b, 7-9). 그리고 전교조가 합법화된다면, 산별체계의 구축과 산별교섭구조가 확보되는 것이고, 전체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과연 전교조 합법화 후 10년 동안 학교 현장의 활동가는 무엇을 느꼈고, 어떠한 과제를 제출하고 있을까? 한 핵심 활동가는 2008년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합법화 이전 1만 조직에서 한때 10만을 내다보는 거대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였으나 현재 전교조는 조합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사운동에 적극적인 한 활동가가 전하는 학교 상황은 “전교조의 현장은 비어가고 있고, 조합원들의 전교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현장 활동가들의 배출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 활동가는 지겹도록 많은 ‘저지와 반대’ 투쟁을 했지만, 이전과 달리 참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조합이기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출발하자, 국민들과 어깨를 걸자고 호소하고 있다(이광석 2008, 23-31).

전교조 합법화 10년 후 학교 현장에서 전하는 핵심 활동가의 성찰은 한국의 처참한 교육현실을 타개해 줄 내일의 전교조를 기대하는 바람이다. 전교조가 1989년 조합 결성 후 어렵사리 조직을 사수하고, 1999년 합법화된 이후에도 계속 내부의 대립적 견해가 표출되는 것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전교조 결성을 둘러싼 대립, 전교조 결성 이후 부가되는 구조적 과제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²¹⁾ 어찌 보면 이 책임이 과거 전교조 결성을 전후한 지도부의 책임일 수 있다.²²⁾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그리고 당시 지도부의 결단과 다른 판단을 했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교조의 다층적 문제를 면밀하게 조망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이야 공안당국의 상식 이하의 폭압적 탄압이 제공했고, 전적으로 그 책임이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있지만, 영킨 실타래의 해법은 전교조가 짊어져야 한다. 전교조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난제들은 중첩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다.

첫째, 1989년 전교조 결성과 대량 해직사태 이후 전교조는 조합의 사수와 대정부 투쟁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즉 학교 현장의 조합원을 추스르는 문제와 거리로 내쳐진 해직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지도부는 “1991년, 1992년 정권의 붕괴위기를 동반하는 민민운

21)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서도 전교조의 합법화는 정리해고를 양보한 대가가 아니냐는 자괴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부영 1998, 20-21).

22) “전교조투쟁과정에서 배치된 전술들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임기응변의 것이었다. 사실 지도부는 전교조 결성 전에 결성 이후의 투쟁에 대해 막연하게 계획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준비나 방침이 미흡했다. 이러한 전술계획의 부재는 「징계저지기」, 「조직사수기」에서 보여주었던 시기상실의 오류, 특히 7. 9 대회와 같은 규탄대회가 일찍 조직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투쟁의 내용을 담보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였다(정기평 1989, 265).”

동의 공세국면이 예상되며, 민민운동이 승리하는 경우 전교조의 합법화 가능성이 크다²³⁾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이미 엄청난 탄압의 국면을 겪은 후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88.4%에 달하는 ‘탈퇴’ 교사들의 비관론과 엄청난 탄압을 직접 목격한 현장의 교사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위압감이 문제였다.

둘째, 학교현장과 해직교사들의 괴리 문제이다.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전교협부터 전교조 결성까지 현장에서, 지회에서 구심적 역할을 감당 해오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구심점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배제되자 학교 현장을 복원할 주체가 부재했다. 현장의 조합주의적 문제의식과 해직교사들이 당면한 절박성의 간극은 점점 커졌다. 특히 이러한 괴리는 해직기간이 점차 길어질수록 더욱 커졌다. “낙관주의는 뭔가 허전한 구멍이 뚫리고, 승리의 막연한 전망보다는 당장의 생존문제가 지극히 냉엄한 현실로 눈 앞에 다가왔다(정기평 1989, 267).”

셋째, 해직의 장기화와 조직적 전망의 부재로 인해 해직교사 다수가 교육민주화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해직 시절이 고달프게 이어져 전교조 투쟁 승리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탓에 ‘논쟁의 생산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되었다(이을재 2002, 130).” 불완전한 특별채용 이후 2000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을 신청한 해직교사 중 상당수는 이미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인사권이 재단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이탈의 정도가 더 컸다.

넷째, 1994년부터 특별채용 형태로 교단으로 복귀한 해직교사들의 경우 전교조 활동에 거리를 두거나 멀어진 교사들과 호봉, 경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심지어 교단에 서보지도 못하고 임용제 외되었던 교사들의 경우 정상적인 임용절차로 임용한 동료 교사들과 10년이 넘는 호봉과 경력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민주화보상심의

23) 전교조 「제1차 대의원대회 자료」(1989).

위원회에서 교육민주화 활동으로 인한 해직을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다섯째, 30여 년 전 전교조 결성을 치열하게 준비했던 세대들은 학교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반독재민주화투쟁을 경험하고 교육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세대들과 가치관과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학교 현장에는 오히려 더 많다. 특히 1993년 이후 임용고시가 완전히 정착하고,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전교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오늘의 전교조가 직면한 다층적 문제들은 문민정부 등장 시기 노동조합으로써 전교조의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했던 문제의식²⁴⁾보다 훨씬 많은 소통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싶다. 한 조직이 이렇게 많은 해직자를 양산하고, 법외 노조로 끈질기게 존속한 적도 없었고, 끝내 합법화를 이루어낸 경우도 없었다. 이것은 전교조의 독심이기도 하지만, 교육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덕분이기도 하다. 이 독심과 열망이 위의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소하고, 오히려 조직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여 향후 전교조가 교육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쟁투형 교육정책을 일소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전교조 해직교사였음이 자랑스럽고, 전교조 조합원이어서 존경스러운 내일을 기대한다. ~~XXXX~~

24) “교육운동은 지금까지 군사독재정권과 대립하여 투쟁하던 방식과는 다른 활동방식으로 일 반교사와 교육현장 및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요구를 담은 대중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이용관 1993, 59).”

참고문헌

- 강경선. 1990. “교육권과 교원노조.” 『민주법학』(제4호). 104-109쪽.
- 강형민. 1990. “1980년대 조직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제6권). 138-169쪽.
- 국정원과거사위원회. 2007. 『과거와의 대화, 미래의 성찰』.
- 김현준. 1998a. “전교조 합법화 이번엔 돼야 한다.” 『노동사회』(11월호). 60-67쪽.
- . 1998b. “전교조 합법화의 의의와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노동사회』(12월호). 4-11쪽.
- 남궁윤. 2007. 「교육정책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파간 의견차이」. 동국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신인령. 1990. “노동기본권과 교원.” 『민주법학』(제4호). 88-98쪽.
- 이광석. 2008.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노동사회』(10월호). 23-31쪽.
- 이금자. 2006. 「전교조 내 공론장 구조와 왜곡 요인에 관한 연구: 합법화(1999년~)이후 전교조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 1998. “전교조 합법화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 『노동사회』(3월호). 20-24쪽.
- 이상호. 2008. 『거기 너 있었는가』. 열린 숲.
- 이영재. 2011. 『자유·희망·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도서출판: 동연.
- 이영희. 1998. 『아이들이 희망이다』. 대구교육연구소.
- 이용관. 1993. “93년 교육운동의 전망과 전교조의 활동방향.” 『정세연구』(통권 44호). 55-63쪽.
- 이원희. 1989. “전교조 금지의 부당성 :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제3호). 85-104쪽.
- 이을재. 2002. “전교조 13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교육비평』 제9호(2002 가을). 129-136쪽.

- 전교조. 1989. 「제1차 대의원대회 자료」.
- _____. 1990. 『한국교육운동백서』. 도서출판: 풀빛.
- _____. 2011. 『참교육 한길로: 전교조 운동사 1 법외노조편』. 도서출판: 참교육.
- 전교조·민교협·강사협 공편. 1989.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 도서출판: 풀빛.
- 정기평. 1989. 『19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전교조 투쟁을 중심으로』. 형성사.
- 정대화. 2007. “광주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5·18민주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엮음. 25-59쪽.
- 조희연. 2007. “광주민중항쟁과 80년대 사회운동.” 『5·18민주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엮음. 105-158쪽.
- KNCC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I).
- 교육부. 「해직교사특별채용추진계획」(2000.1.28).
- 「대통령 지방순시 중 지시사항(12-07-49)」: 「고교생 의식화교육 예방지도 철저(89.2.10. -3.18)」
- 「문교부업무보고시 대통령지시사항」(1989.4.25).
- 「부산덕원공고 평교협 발기 취지문」(1988.10.15).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법률 제6435호).
- 『전교조신문』, 1989.10.11일자.
- 『한겨레신문』, 1988.12.29일자.

투고: 2012.3.30 심사: 2012.4.7 확정: 2012.4.27